



식품의약품안전처

## 식품의약품안전처

수신 수신자 참조

(경유)

제목 「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령」 일부개정령 공포 알림

1. 「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령」 일부개정령이 개정·공포(대통령령 제33160호, '22.12.27.) 되었음을 붙임과 같이 알려드립니다.

주요 개정 내용	시행일
▪ 냉장·냉동시설을 갖춘 식품 판매 영업장에서 식육판매업 영업신고 없이 포장육 판매 허용	'23.3.1.
▪ 식용란선별포장업 영업자 자신이 직접 선별·세척·건조·살균·검란·포장한 달걀을 판매하는 경우 식용란수집판매업 영업신고를 하지 않아도 되도록 함	'23.3.1.
▪ 통신판매업자가 판매한 축산물을 우유류판매업의 영업자가 배송하기 위해 보관하는 경우 축산물 보관업 허가대상에서 제외	공포일 ('22.12.27.)
▪ 과태료부과금액을 법률에 따른 상한액의 10% 이상으로 조정하는 등 과태료 부과 기준 정비(별표4) - 식용란선별포장업자가 달걀을 포장하지 않고 보관·운반·진열 또는 판매한 경우에는 1차 위반 시 200만원, 2차 위반 350만원, 3차 위반 500만원 과태료 부과	공포일 ('22.12.27.) *제2호차목: '23.3.1.

2. 동 개정령은 2022년 12월 27일자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(<http://www.law.go.kr>) 에도 게재되어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

붙임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(대통령령 제33160호). 끝.

## 식품의약품안전처장



수신자 중앙부처(법령 담당부서), 농림축산식품부장관(농축산물위생품질관리팀장), 농림축산검역본부장(동물검역과장), 시·도 축산물 관련 부서, 보건환경연구원, 동물위생시험소, 축산관련 단체

주무관 남경우 사무관 대결 2022. 12. 27. 과장 전결  
김충현

협조자

시행 축산물안전정책과-9478 (2022. 12. 27.) 접수

우 28159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오송생명2로 187, 축산물안전정책과 / www.mfds.go.kr

전화번호 043-719-3247 팩스번호 043-719-3270 / nkw98@korea.kr / 대국민 공개

힘내라 대한민국!